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83
----------	------

제출년월일 : 2022년 1월 2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주택공급을 촉진하고자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안 별표).

- (원칙) 부지면적 2만5천 m^2 이상

- (예외) 부지면적 5만 m^2 이상(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인 건축물이더라도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10. 21.~11. 10.)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별표 제1호가목2)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 단,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부지면적 5만㎡이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개정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노리라(02-2133-2226)